

(問) 法律 2482號 第2條 第3項에 規定한 特殊建物은 “特約付火災保險” 加入을 原則으로 하되 時價 決定基準에 依해 保險金額은 所有者가 定하고 加入시키면 모든 節次가 끝나는데도 本入의 意思와는 다르게 保險會社側 決定價額으로 加入을 要求하고 있으며, 또한 消滅式 또는 貯蓄性의 加入方法을 두어 加入者가 兩者擇一하도록 하는 方法은 없는지요?

「答」 火災로 因한 災害補償과 保險加入에 關한 法律에 立法취지로 보아 保險金額을 保險加入者가 決定할 경우.

첫째로 特殊建物 所有主는 保險料負擔을 고려 特殊建物の 價額을 낮게 策定, 罹災時 一部保險에 依한 人命被害에 對한 適正한 補償은 커녕 實際損害額을 補償받을 수 없을 경우 損害復舊에 기할 수 없으며 保險契約者 및 第3者에 對한 相當한 金額의 補償이 不可能할 경우에는 社會的 문제가 發生하게 될 것이며,

둘째로 大型事故가 發生하였을 경우에 建物所有主가 다행이 財産이 있을 경우에는 그 補償이 可能 하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義捐金이나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補助에 依하여 약간의 補償을 할 수 밖에 없는 實情등을 고려 災害復舊費 또는 人命被害補償을 制度的으로 責任지는 保險制度를 同法律의 趣旨에서 잘 반영되어 있을 을 알 수 있다.

그 實例로 同保險의 社會保障의 性格을 감안하여 身體損害賠償特約

付保險金은 이를 押留할 수 없도록 規定하고 있으며, 保險金の 請永도 保險契約者가 아닌 被害者가 直接 保險會社에 請永할 수 있도록 하여 被害者의 早速한 安定을 圖謀코자 한것 等を 들수가 있다.

時價決定方法과 위에서 言及된바 와 같이 同保險이 任意保險이 아닌 社會保障의 性格을 고려할 때 保險金額을 合理的으로 決定하기 위하여 서는 그 기준이 필요하므로 保險金額決定方法의 關係法條文과 關連하여 그 基準은 財務部令으로 定하도록 하고 있다.

相談코너

特殊保險

따라서 特殊建物の 時價는 特殊建物時價決定基準額表에 의한 金額 定하도록 하고, 該當建物の 건축설계 요령, 건축자재의 우열 施工方法의 差등, 地域差, 用度, 使用期間에 따르는 감가와 물가상승률을 고려 同基準額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範圍內에서 加減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범위를 초과하여 建物時價를 加減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契約 當事者間의 合議

에 의하여 가감조정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萬一保險契約 當事者間에 合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特殊建물을 기준으로 하여 決物時價調査會에 회부 의견을 들어 同加額을 建物主에게 제시 합의하여 계약을 체결 토록 하고 있다.

同保險은 義務保險이면서도 보 험계약에 있어서 특수 건물 소유자가 시가결정에 異議가 있을 경우에는 언제라도 異議제의를 하여 조정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貯蓄性保險加入을 규정한 조항이 없으므로 加入者의 意思에 따라 장기 저축성보험 加入을 할 수 있으며 특약부 화재보험에 부가하여 風災 水災또는 倒壞등으로 인한 손해를 擔保하는 保險에 加入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혹자는 同法律 第5條 第5항에서 규정한, 특수건물] 소유자는 제1항의 특약부화재보험 계약을 매년 更新하도록 한 것들을 마지 一年기간으로 계약을 할수 있는 것같이 해석하고 있으나 동항은 1회만을 가입한후 미갱신계약의 상태, 즉 무보험상태가 계속되지 않도록 규정한 조항으로서 반드시 1년마다 계약체결을 하도록 규정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特殊保險1部>
차장 조정수